



의안번호	제138호
------	-------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20. 10. 13.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38호
----------	-------

제출연월일 : 2020. 10. 13.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폐수처리시설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시에서 직접 발주하게 됨에 따라, 그 비용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하는 자에게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2조(세입)에 제4호 "입주자 부담금"을 신설한다. (안 제2조)
- 나. 제3조(세출)에 제3호 "처리시설 운영 위탁관리비"를 신설한다. (안 제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대상 아님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09. 09. ~ 09. 29. (21일간)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입주자 부담금

제3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처리시설 운영 위탁관리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사회적경제과장	김 민 영
	산업단지팀장	박 승 헌
	담 당 자	최 정 재 (041-746-603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세입)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4. (생 략)</p>	<p>제2조(세입) -----</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입주자 부담금</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제3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 략)</p> <p><u><신 설></u></p> <p>3. (생 략)</p>	<p>제3조(세출) -----</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처리시설 운영 위탁관리비</u></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1.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공공폐수처리시설 TMS유지관리용역 비용
 ※ TMS(Tele-Monitoring System의 줄임말) : 수질원격감시체계

나. 추계결과 : 매년 120백만원

◎ 2021년

구 분	산출기초	금액(천원)
공공폐수처리시설 TMS 유지관리 용역	공공폐수처리시설 TMS유지관리 용역 × 1식 = 120,000,000원	120,000

- . 사업기간 : 2021년부터 계속
- . 사업비 : 매년 120백만원

3. 작성자

사회적경제과장 김 민 영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국 비						
기 금						
도 비						
시 비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세 출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201 일반운영비 01 공공운영비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재원 조달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의존 재원	소 계	0	0	0	0	0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지방세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세외수입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공모사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④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제38조의6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